

한방 칼럼

탈모 이야기 2

한방에서는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음(陰)적인 사람으로 보고, 가늘고 축 늘어진 사람은 양(陽)적인 사람으로 본다. 주로, 음적인 사람의 머리 색은 까맣고, 양적인 사람의 머리카락은 황색이거나 갈색을 띄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머리가 정신의 집중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머리카락이 굵고 뺏뺏하며 술이 많은 사람은 음적인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은 저혈압 증상이 비교적 많다.

반면 양적인 사람은 머리카락이 드물고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머리카락이 굵고 술이 많은 음적인 사람이 정상 혈압보다 높아졌을 때에는 소화기 계통의 원인으로 인한 고혈압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반대로 머리 술이 적거나 가늘게 늘어지는 사람은 평소 혈압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양적인 사람은 신장 기능이 나 소변 관계의 질환이 자주 있기 때문에 비뇨기 계통의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음적인 사람도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는 것이 좋다.

요약해 보면 머리 술이 많은 사람에게서 심인성 질환이 오기 쉽고, 술이 적고 대머리가 된 사람에게서는 혈압이나 내분비 계통의 질환이 오기 쉽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이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신장 및 내분비 기능이 왕성하면 모발에 윤기가 있고 잘 빠지지 않으며 검은 머리카락이 많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이 적으면 흰 머리카락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흰머리를 검게 만드



는 방법으로 신장이나 내분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이나 음식을 먹게 한다.

머리털은 신에 속한다[髮屬腎] 『내경』에 “신(腎)은 털을 주관한다. 또한 신은 뼈와 연관이 있는데, 그의 상태는 겉으로 머리털에 나타난다”고 써어 있다.

머리털은 혈의 나머지이다[髮者血之餘]

혈(血)이 성(盛)하면 머리털에 윤기가 있고 혈이 부족하면 머리털[髮]에 윤기가 없으며 혈이 열을 받으면 머리털이 누렇게 되고 혈이 상하면 머리털이 희어진다[입문].

『내경』에는 “여자는 7살에 이빨을 갈고 머리털이 길어지며 35살에 얼굴이 마르고 머리칼이 빠지기 시작하다가 42살이 되면 얼굴이 마르고 머리가 희어진다. 남자는 8살에 이빨을 갈고 머리털이 길어지며 40살에 머리털이 빠지고 이빨에 윤기가 없어진다. 그리고 48살에 얼굴이 마르고 머리가 희어진다.”고 기록돼 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이큐베멜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학생신분 변경 시 유의 사항 (최근 이민국 메모를 중심으로)

J-1, E-2, H1-B 또는 B1/B2(방문) 비자처럼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 가장 선호되는 신분이 F-1 (학생)신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선호되는 체류신분이기는 하지만 2015년에 있었던 대규모 학생비자 사기 사건 이후 학생신분 변경에 대한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많은 신분 변경 신청인들이 공부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신분 유지를 위해 학생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매우 까다롭게 서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17년 4월에 발표된 이민국 메모를 중심으로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이민국은 방문비자(B1/B2)로 입국한 외국인이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경우에 적용될 새로운 지침(Special Instruction)을 메모를 통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방문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만약 방문 신분 (B1/B2) 만료일에서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까지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방문 신분 (B1/B2)의 연장 (Extension)을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 (change of status)과 별도로 함께 접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방문 신분이 3월 30일에 만료되고 학교의 프로그램이 5월2일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분 만료일로 부터 학교 시작일까지의 날수가 30일이 넘기 때문에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이외에 현재 방문 신분 (B1/B2)의 연장 (Extension)까지 따로 이민국에 접수하여 합니다.

이 메모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경우에 적용되는 메모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른 비이민신분 (J-1, H1-B 또는 E-2)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신분 변경 신청인이 적어도 학교 시작 30일 전까지는 이전의 J-1, H1-B 또는 E-2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신분 변경이 최근 5-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신분 변경을 현재 방문 이외 다른 비이민 신분 (J-1, H1-B 또는 E-2)이 만료되기 전 5-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민국은 특히 J-1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전 J-1 신분 만료일과 학교 시작일 사이에 기간이 30일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많은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각의 경우 항소 (Appeal)가 허락되지 않고 오직 재심 (motion to reconsider or reopen)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재심의 경우는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유의해 학생신분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적어도 현재 신분이 만료되기 5-6개월 전에 학생신분 변경을 신청하기를 당부드립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